

홍콩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	----------------------

(2014년 5월 14일) / 홍콩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*검역)	☐ “홍콩, 식품 잔류농약 규제법규 2014년 8월 1일자 시행”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☐ 주요 내용 ○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(CFS)에서는 홍콩의 식품 잔류 농약 규제하는 "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" 을 지난 2012년 6월 마련,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. ○ 농약류 구분 - 식품 구분 - 최대 잔류농약 허용기준 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약 78개의 제외대상 농약류에 대하여 첨부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대상 및 허용기준의 경우 점차적인 조정 및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둠. ○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여 적발될 경우 최고 레벨 5의 벌금(5만 홍콩달러) 및 6개월의 구금형 부과 가능성이 있음. ○ 관련 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되었으며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공함. [식품안전센터 관련 홈페이지 - 가이드라인] http://www.cfs.gov.hk/english/whatsnew/whatsnew_fstr/whatsnew_fstr_21_Pesticide.html [홍콩 관보 홈페이지 - 잔류농약 규제법규] http://www.gld.gov.hk/egazette/english/gazette/disclaimer.php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등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잔류 농약 기준을 표준화하고 농약의 잔류 기준치가 초과된 식품의 판매나 수입 등은 식품 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,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. ○ 제조업은 물론 무역업,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영향이 예상되어 홍콩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수입/수출 업자들의 경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사전 점검 및 확인 필요함.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4. 5 .1 홍콩 식품안전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됨